

연구업무규정

[규정 제 46호
제정 2019. 1. 18.]

제1절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연구업무규정(이하 “규정”)은 서울에너지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에너지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연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업무 수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과제의 분류 및 정의)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, 위탁연구과제, 공동연구과제, 수탁연구과제, 수시연구과제로 구분하며,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‘기본연구과제’라 함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당해연도 연구과제를 말한다.
- ② ‘수시연구과제’라 함은 공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가 수시로 수행하는 단기 연구 과제를 말한다.
- ③ ‘위탁연구과제’라 함은 연구과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 및 개인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.
- ④ ‘수탁연구과제’라 함은 공사가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.
- ⑤ ‘공동연구과제’라 함은 외부기관 및 개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. 단, 수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시급성과 과업내용의 명확성으로 인해 규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절 연구기본계획의 수립

제4조(연구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년 공사 계획 수립 일에 준하여 다음연도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
제5조(연구과제의 제안) ① 연구소는 기본연구과제를 위해 공사 임·직원들에게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과제 제안을 받는다.
② 공사의 임·직원들은 필요 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.
③ 연구소는 연구소 외부의 전문가그룹과 개인, 관련기관, 학계, 단체 등으로 부터 연구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.

제6조(연구과제선정)

- ① 기본연구과제의 선정은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.
- ② 수시연구과제는 과제제안자,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.
- ③ 위탁·공동·수탁연구과제는 연구소장이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와 협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.

제3절 연구관리위원회

제7조(연구관리위원회) ①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부서 간 협력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이 되며, 연구 소장이 내·외부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어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 단, 외부위원의 비중은 전체 성원의 1/3 이상으로 한다.
- ③ 연구관리위원과 간사 및 서기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내부 위원은 학술적,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공사 직원 중 직급 4급 이상인 자
 - 2. 외부 위원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 이상인 자
 - 3. 간사는 수석 연구원 또는 기술직·일반직 3급 이상인 자
 - 4. 서기는 책임 연구원 또는 직원
- ④ 연구관리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·검토한다.
 - 1. 연간 연구기본계획 검토 및 선정
 - 2. 연구결과평가
 - 3. 기타 연구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
- ⑤ 연구관리위원회 중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4절 연구의 수행 및 평가

제8조(연구책임자의 지정)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
- ②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) ① 연구책임자는 선정된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한다.

② 연구과제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연구의 개요
2.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
3. 연구체계
4. 세부 연구계획
5. 예산 내역
6. 기타 주요 사항

제10조(수탁연구과제의 수행방법) ① 연구소장은 외부로부터 수탁연구과제 의뢰가 있을 경우 수행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연구과제는 의뢰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된다.

③ 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연구과제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종료기한을 연기하거나 연구책임자 변경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연구종료 후 당해 사업의 보완·수정 등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과제 위탁기관과 협의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일까지 최종 연구보고서 및 연구종료계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연구종료기한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될 때에는 사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.

⑧ 연구책임자는 사장의 승인 후 과제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성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·공동연구과제의 수행방법) ① 위탁·공동연구과제의 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연구사업 및 위탁·공동연구계획에 의거 위탁된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능력개발) 연구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 견학, 전시회 참가 및 학술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
제13조(외부 자문) ①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①항에 따라 외부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연구 보고)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연구소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연구보고서 발간)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일까지 최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·공동·수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을 생략 할 수 있다.

제16조(연구성과의 대외발표 등) ①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 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·공동·수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 성과를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 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①항에 의한 기고 또는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평가)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가 종료 되는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평가결과는 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종합근무평정,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연구과제의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5절 연구업무의 지원

제18조(연구 협력 지원) 연구소장은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인사 발령 승인 후 인사담당부서 장의 협조를 통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적합한 직원들을 연구소 산하 겸임 또는 전임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9조(연구원의 교류) ① 연구소장은 연구수행 상 국내외 관련기관과 교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인사 발령 승인을 받아 연구원을 파견하거나, 국내외 관련기관 소속 연구원 등을 파견 받아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제①항에 의하여 파견하거나 파견 받는 연구원의 근로조건 등 처우는 기관 간 상호 협약에 의한다.

제6절 연구의 사후관리

제20조(연구성과의 귀속) ① 직무수행 중 획득한 모든 연구성과는 공사에 귀속한다. 다만, 산학연 협동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·위탁·수탁연구과제에 의한 연구성과는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.

② 공사 연구비 등으로 구입된 장비 및 비품 등은 공사에 귀속한다.

③ 연구 결과물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소장 승인 하에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부서로 이관한다.

제21조(기록관리)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제안과 내용, 실행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(2019. 1. 18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